

홍수면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208 |
|----------|-----|

제안년월일 : '93. 3. 9

제안자 : 산업위원장

1. 주 문

-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홍수부지 경작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임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충북 관내의 농지개량조합 관할 68개소의 농업용수 저수지 상류 주변에 842호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는 200만 ㎡의 홍수부지에 대하여 현행 생산량의 10%선을 받고 있는 임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8) 을 개정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 없 음 "

洪水敷地 賃借料 賦課 徵收

關係法 改正에 關한 建議文 (案)

國會議長 께

(農林水産部 長官)

새 政府의 公式 出帆과 함께 新 韓國의 建設 그리고 特히 福祉 農村 建設을 爲하여 항상 盡力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온 道民과 함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當面하고 있는 農村의 어려운 一面을 建議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農村은 農産物 輸入開放의 威脅과 더불어 高齡化로 인한 人力 不足, 過多한 生産 費用等 여러가지 불리한 條件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지탱이 어려워 農村을 떠나는가 하면, 營農을 포기하는 등으로 農村이 破産化 地경에 이르렀습니다.
- 哀惜한 農民의 처지를 보다못한 忠北道議會 議員一同은 道民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建議를 드리게 됨을 諒察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忠北道 管内에는 郡單位 農地改良組合 管轄에 68個所의 農業用水用 貯수지가 施設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 上流 周邊에는 842戶의 農家가 通常 實際 水沒되지 않는 部分의 약 200萬
㎡의 洪水敷地를 管理 機關과 賃貸借 契約하여 耕作하고 있습니다.

○ 事實上 전술한 洪水 敷地에 對하여는 貯水用 水域 目的 以外 天災地變으로 因한 洪水時
를 對備한 豫想 水域으로만 管理하는 것이며,

또한 賃借人 大多數가 土地의 前 所有主들임을 참작 再起의 힘이 될 수 있도록 洪水敷地
使用料 賦課 徵收에 관한 關係法 規定中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 零細한 農
民이 高장에서 定着할 수 있도록 特別한 配慮 있으시기 仰望하옵니다.

1993. 3.

忠 清 北 道 議 會 議 員 一 同